

서 면 답 변 서

질의 위원	이경진 위원	소 속	평창군의회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종합민원실장)	일 자	질의: 2001. 12. 3 답변: 2001. 12. 4(10:00)
회 의	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감사활동 1일차)		

【 질 의 요 지 】

주진임대아파트 위장전입 민원처리사항

【 답 변 요 지 】

○ 먼저 주진임대아파트 대표(김영배)회장의 소원신청경위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평창읍 주진리 주진임대아파트 대표 회장은 사업주와 세입자간의 이권문제 발생으로 동 아파트에 입주한 이래봉외 1인(윤태화)에 대하여 위장 전입 여부를 평창읍사무소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주민등록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지도 등으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군청에 소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위장전입자로 이의신청한 2명에 대하여 평창읍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사실조사와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평창읍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이전 후 미거주자 사실조사 의뢰에 대하여 현장방문(2회)을 걸쳐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 주말 또는 월 2~3회 방문하여 1~2일간 거주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장기출타 시에도 주변 사람 등에게 자신의 소재 및 연락처를 남겨 두어 주민등록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평창읍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주진임대아파트 대표회장은 군의 회신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강원도에 청구하였으나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붙임 : 행정심판 재결서 1 부 끝.

평 창 군

우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0374)330-2217 전송 330-2594
 처리부서 : 기획실(본관3층) 실장: 권순철 담당주사: 전완택 실무자: 임성원(행211)

문서번호 기획61240-714
 시행일자 2001. 7. 19.(년)
 (공개여부)

발음 종합민원실장
 참조

선람		<i>권순철</i>	지시		
접수	일자시간	2001. 7. 19	결재·공람		<i>권</i>
	번호	3937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행정심판 재결서 이첩 통보

1. 감사61240-1037(01. 7.1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심판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5회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2001. 6. 25)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서를 붙임과 같이 이첩 송부하오니 재결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3. 청구인께서 재결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으신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재결서 1부. 끝.

4 강원도 행정심판 위원장. 당사자비통보조치

평 창 군



강 원 도 재 결

사 건	2001행심75 주민등록말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성 명	김영배외 32인	
	주 소	평창군 주진리 주진임대아파트 가동 605호	
피청구인	평 창 군 수	참 가 인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청구외 이래봉과 윤태화의 주민등록을 말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3.23. 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5조		

위 사건에 관하여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1. 7. 10.

강 원 도 지



이 유

2001 - 75

1. 사건개요

2001.3.15. 청구인이 청구의 이래봉과 윤태화가 위장전입을 하였기 주민등록을 말소해 달라는 민원서류를 제출한데 대하여 2001.3.23. 피청구인 소속 평창읍장이 사실조사를 한 결과, 수사 방문 또는 거주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교류를 하고 있어 주민등록법상 거주하고 있다는 민원회신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이래봉은 재산권 보전을 위하여 위장전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을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진임대아파트 가동 302호의 청구의 이래봉은 위 아파트 시공업자인 청구의 박원남에게 씹크대를 납품한 자로서 공사비를 아파트로 변제받아 분양시까지 임대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동 아파트 가동 603호·606호는 기 거주자가 있음에도 603호에 청구의 이래숙을, 606호에는 청구의 이해정을 위장전입시켜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나. 위 이래봉은 자신을 위장전입자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동 아파트 가동 307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의 황익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2001.4.13. 15:00경 평창경찰서에서 대질신문시 위 이래봉은 302호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임대사무실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같은 법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사실 조사때 서대별 명부에 서명이 확실하지 않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위 이래봉은 재산권 보전을 위하여 위장전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주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본안전 항변

위장전입자에 대한 주민등록말소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청구외 이래봉과 윤태화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의뢰를 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 주말 또는 월 2~3회 방문하여 1~2일간 거주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있었고, 장기출타 시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재 및 연락처를 남겨 두어 주민등록관리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었다.

나. 주민등록사무편람의 직권조치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직장 관계로 장기 출타가 불가피할 경우 3개월의 범위내에서 장기출타신고를 하면 직권말소 등 행정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소재 또는 연락이 불가능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지 개인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시 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주민등록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사실조사 의뢰서, 사실조사서, 민원서류 화신 공문,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3.15. 주진임대아파트 동대표 회장 명의로 피청구인 소속 평창읍장에게 위 아파트의 시공업자와 보증금, 임대료, 하자보수 등 현안문제와 관련 위장전입한 청구의 윤택화와 이래봉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 달라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위 윤택화와 이래봉에 대하여 2001.3.20.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 평창읍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이미지(지방행정주사보)의 사실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래봉에 대하여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331-10 동양쌍크 사업장 일 관계로 나가 있으나 주말에는 내려와 생활하고 있으며, 사실조사시 본인이 있었고, 인근에 거주하는 이선자에 의하면 매달에 수시로 내려와 생활하고 있다고 하여 조사 결과를 "거주"로 적시하고 있다.

② 윤택화에 대하여 주진1리 이장에게 확인한 결과 건설공사장 일 관계로 나가 있으나 수시로 왕래하고 있고, 주진임대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는 이돈희는 한달에 두세번은 왕래하고 있다고 하여 조사결과를 "거주"로 적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위 사실조사 의뢰에 대하여 2001.3.23. 평창읍장은 위 이래봉과 윤택화는 상시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나 매 주말 또는 월 2~3회 방문하여

1~2일간 거주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장기출타시에도 이장 및 주변 사람들에게 소재와 연락처를 남겨두어 주민등록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권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라) 2001.4.20. 피청구인이 발급한 위 윤태화와 이래봉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래봉은 1999.10.15. 평창읍 주진리 506-1번지 주진임대아파트 가-302호로 전입하였고, 윤태화는 2000.12.11. 평창읍 주진리 506-1번지 주진임대아파트 다-501호로 전입하여 2001.3.27.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1091 미주아파트 101-804호로 전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아파트내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자의 주민등록 말소를 해 달라는 것으로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주민등록의 말소는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인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신고말소와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장이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로 말소되는 직권말소가 있는 바, 청구인들에게는 위 이래봉과 윤태화의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청구인들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 사항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정본입니다.

2001. 7. 10.

강 원 도 지

